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4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위성곤 • 부승찬 • 이기헌

정진욱 · 김한규 · 허성무

오세희 • 문대림 • 민형배

윤건영・황정아・허 영

박홍배 • 이재관 • 이건태

전재수 · 서영교 · 박해철

이워택 • 주철혂 • 위성락

황명선 · 김문수 · 이광희

문금주 • 채현일 • 민홍철

권향엽 · 서삼석 · 이재강

박수현 • 양부남 • 임미애

의원(33인)

제안이유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

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 기구에서 지정·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녀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해녀어업의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시·도지사는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연간 어업 종사일수 및 수산물 판매액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초로 해녀 자격을 취득한 40세 미만 해녀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잠함병 및 이와 관련된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판로 확보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차. 국가는 해너의 권익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해너문화의 연구·전시· 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해녀문화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 조).
-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 ·교육을 위하여 해녀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 타. 해녀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함(안 제15 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6조).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 어업으로서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닌 해녀어 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해녀어업의 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 · 채취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받은 여성을 말한다.
-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 3. "해녀문화"란 해녀가 해녀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물질기술, 신앙, 어로민속지식,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

업의 지원 및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 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해녀어업의 현황 및 전망
- 3. 해녀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 4. 해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5. 해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해녀어업의 문화적 가치 전승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

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 시기,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해녀증의 발급 및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해녀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1.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나잠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제출할 것
 - 2. 연간 어업 종사일수 및 수산물 판매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시·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8조(해녀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 녀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이하 "해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해녀 자격을 취득한 40세 미만 해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이하 "정착지원 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수당이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화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 지급액, 지급 방법·절차 및 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진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잠함병(「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및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해녀어업 종사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람
- 2. 해녀어업 종사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등 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 선정, 진료비 지급 범위 및 진료비 신청·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판로의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로 확보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해녀 양성교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녀

- 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정·기관의 지정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의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해녀문화연구원의 설립) ① 국가는 무형유산으로서의 해녀의 권익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의 연구·전시·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해녀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14조(해녀박물관의 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관련 문화유산

- 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을 위하여 해녀박물관을 설립·운 영할 수 있다.
- ② 해녀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녀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해녀의 날 지정) ① 해녀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해녀 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 산적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문화를 널리 알 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세계유산 지정 및 보전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 2.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관련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 3.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 4. 그 밖에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와 관련된 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